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883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911호	고민정의원	2025.11.5.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14760호	김영호의원	2025.12.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 회부 (2025.12.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6. 3. 24.)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욕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 시위등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u> <u>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u> <u>등) 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u> <u>· 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u> <u>관서장”이라 한다)은 「집회</u> <u>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u> <u>에 따라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u> <u>시위(이하 “시위등”이라 한다)</u> <u>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u> <u>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u> <u>그 신고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u> <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u> <u>할경찰관서장이 제1항에 따른</u> <u>시위등의 신고장소가 교육환경</u> <u>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u> <u>확인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u> <u>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열람</u> <u>·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u> <u>③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보호</u> <u>구역을 장소로 신고된 시위등</u> <u>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유로 「집회 및 시위에</u>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시위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출신 국가, 출신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 한 사람 또는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밖에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